

사상가 별 중요 제시문 모음-사회 정의

니부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수특 76p)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수특 76p)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 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수특 82p)

개개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 그러나 공감과 이해, 정의감 등은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서는 개인들에 비해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수특 88p)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로 옮겨 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된다.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불가피하며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강제력도 병행되어야 견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2020 수능 12번)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2020 9평 6번)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2020 6평 5번)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2019 6평 13번)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018 수능 13번)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 간의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이므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2017 6평 10번)

를스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수특 82p)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가치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로 인해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수특 85p)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한편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수특 86p)

·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수특 87p)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2020 수능 10번)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유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2019 수능 14번)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로 도출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2019 6평 14번)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 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2018 수능 9번)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 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2016 9평 13번)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적이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0 9평 17번)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서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2017 9평 8번)

노직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유 상태는 정의로운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의 발생을 막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수특 83p)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수특 85p)

개인으로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과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인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수특 88p)

분배는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 낸다. (2020 수능 10번)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다.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므로 좁은 기능으로 제한된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된다. (2020 6평 15번)

최소 국가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발생하며,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2019 수능 14번)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定型)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 6평 11번)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 (2018 수능 9번)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하였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 또한 정의롭다. (2020 9평 17번)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2016 9평 13번)

알차

복합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민 X가 공직에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다른 취업 기회들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수특 79p)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입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입니다. (수특 83p)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을 복합 평등이라고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공직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등과 같은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수특 86p)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윤사 2020 수능 7번)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윤사 2020 6평 10번)

칸트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준다. (수특 80p)

공적인 정의의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生)이라 해도 생과 사(死) 사이에 동종성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수특 88p)

인간은 내적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네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네 자신에게 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형벌에서의 정언명령이다. (2020 수능 14번)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2020 9평 19번)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2019 수능 12번)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 (2015 9평 9번)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형벌은 스스로가 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9 6평 6번)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다.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 (2020 6평 19번)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2016 수능 19번)

베카리아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범죄의 이득이 크다 해도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기를 택할 자는 없다.…(중략)…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수특 81p)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 인상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에게 범죄자가 노역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형벌이다. (2020 수능 14번)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기꺼이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것이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공리에 부합한다. (2019 수능 12번)

법은 특수 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018 9평 17번)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2017 수능 10번)

사형은 범죄자를 교정하기 보다는 죽여서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준다. (2020 6평 19번)

벤담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만약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수특 83p)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처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수특 87p)

루소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중략)…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수특 81p)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016 6평 6번)